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상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9

발의연월일: 2020. 6. 1.

발 의 자:이상직・유동수・인재근

김병욱 • 이원택 • 이개호

우상호・황 희・송갑석

김승남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직전 연도 매출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및 장부기장 의무의 면제, 세금액 산정 방식과 납세 절차를 간소화하는 간이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.

그런데 올해 초부터 전 지구적으로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 9 사태가 진정되지 못한 채 장기화·고착화되어 감에 따라 수출 및 내수시장의 동반 부진 등 경기 위축으로 인한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의 매출감소와 그에 따른 고용불안 및 연쇄적 신용위험이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음.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차제에 납세의 간소화를 통해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이 고통을 감내해 나갈 수 있도록 간이과세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'4천800만원'에서 '1억원'으로 상향하려는 것임(안 제61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4천800만원"을 "1억원"으로 한 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1조(간이과세의 적용 범위) ①	제61조(간이과세의 적용 범위) ①
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	
급에 대한 대가(부가가치세가	
포함된 대가를 말하며, 이하	
"공급대가"라 한다)의 합계액이	
<u>4천800만원</u> 이상 같은 금액의	<u> 1억원</u>
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	
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	
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	
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	
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	
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	
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	
받는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	<u>.</u>
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	
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.	
1.・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